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
----------	-----

제안연월일 : 2023. 10. .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농촌중심지사업으로 취득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관리위탁)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시설물 등 운영 관리
- 추진 필요성
 - 위탁시설물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운영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 위탁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
 - 위탁시설 장비 등 유지·관리
 - 위탁시설 이용객의 안전, 편의도모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 명: 봉평문화복지센터(리모델링) 1동 : 3층 915.25㎡
- 시설위치: 봉평면 창동리 396-39 (봉평면 기풍3길 5)
- 시설구성
 - 지상 1층 : 목욕탕 (314.65㎡) - 지상 2층 : 체력단련장 등(270㎡)
 - 지상 3층 : 소공연장 등(270㎡) - 옥 탑 (135㎡ 면적제외)
 - 부대시설: 기계실 1식(면적 60.6㎡)

마. 민간위탁기간

- 위탁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 수의계약 (※대상자 미 선정시, 공개모집으로 진행)
 - 아래 대상자 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집 및 선정(봉평면 협조)
 -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 결과 의회 제출
- 대상자격
 -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마을단체 및 마을법인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위탁운영비: 72,000천원 (※붙임2 원가계산표 참고)
 - 예산반영('24년 당초예산)
 - 공유재산법 27조에 따라 수입보다 지출이 큰 경우 경비지원 가능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직영관리	장점	○ 시설운영비 직접 집행으로 인한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단점	○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 시설 관련 민원의 현장 대응의 어려움 ○ 연계가능한 여러 주민 프로그램들을 직접 운영할 인력 부족
위탁관리	장점	○ 지역주민 및 공동체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 ○ 해당 시설물에 대한 민원 및 애로사항에 즉각 대응 가능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계 프로그램 등 주민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홍보 및 마케팅 가능
	단점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업체 변경 시 계속성 결여
검토결과	<p>○ 봉평문화복지센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취득한 시설물로, 주민의 편의 및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등을 통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p> <p>○ 봉평문화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시, 평창군 조직의 인력 부족 및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의 문제점으로 위와 같은 운영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p> <p>○ 검토 결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주민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p>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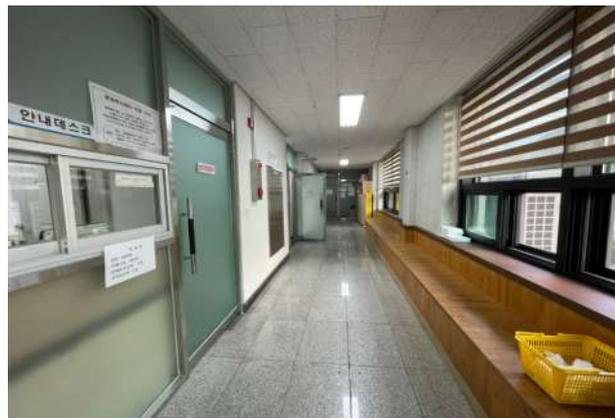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건물 외관>



<1층 목욕탕>



<2층 체력단련장>



<3층 회의실>



<3층 소극장>

붙임2

관리위탁 원가계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단 원 가	순 운 비	인 건 비	기 본 급	91,135,968		
			제 수 당	17,937,216		
			상 여 금	9,113,597		
			퇴 직 급 여 총 당 금	9,848,898		
			소 계 (A)	128,035,679	61.1%	
	영 원 가 비	경 비	여 비 교 통 비	640,000		
			사 무 비	5,244,230		
			유 지 비	14,593,725		
			제 세 공 과 금	14,638,140		
			사 회 보 험 료	12,420,382		
			복 리 후 생 비	6,720,000		
			소 계 (B)	54,256,477	25.9%	
	순 운 영 원 가 (C = A + B)			182,292,156	87.0%	
	일 반 관 리 비 (D = C x 5 %)			9,114,607	4.3%	
이 윤 (E = (C + D) x 9.5 %)			18,183,642	8.7%		
총 지 출 (F = C + D + E)			209,500,000	100%	만원이하 절사	
수 입	목 욱 탕		81,846,000			
	헬 스 장		21,354,000			
	패 키 지		22,099,000			
	임 대 료		6,623,750			
	기 타 수 입		5,662,775			
	총 수 입 (G)			137,500,000		만원이하 절사
총 원 가 (G-F)			-72,000,000			

관계법령 발취

□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시설의 관리 등)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마을단체 및 마을법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을 등에 수의계약 등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